

바다의 힘!

영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과감 · 공유 · 소통 · 협력]



2017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 1.



해양수산부



목 차



< 달라지는 주요 정책 그래픽 >

I. 해양 분야

1. 해수욕장 이용 환경이 개선됩니다. 1
2. 스쿠버다이빙점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2
3.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이 쉬워집니다. 3
4. 해상케이블카 업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줄어듭니다. 4
5. 해양심층수 미네랄 추출물이 모든 식품 원료로 활용됩니다. 5
6.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52종에서 77종으로 늘어납니다. 6
7. 사라진 갯벌이 다시 돌아옵니다. 7
8. 백령도에 점박이물범 인공휴식지를 조성합니다. 8
9. 해양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건립합니다. 9
10. 남극 내륙연구를 위해 코리안 루트(K-루트)를 개척합니다. 10
11. 이사부호를 통해 대양연구의 닻을 올립니다. 11

II. 수산 분야

1. 오징어, 꽃게, 참조기도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12
2.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13
3. 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증명이 보다 간편해집니다. 14
4. 어선거래가 투명해집니다. 15

5. 수산물 유통·판매 등 수협 본연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16
6. 터봇, 향어, 메기도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17
7. 꽃게 자망에도 생분해성 어구가 보급됩니다.	18
8. 어업인 복지가 향상됩니다.	19
9.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를 추가합니다.	20
10. 활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물류센터를 건립합니다.	21
11.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22
12. 차세대 한국형 어선 개발에 착수합니다.	23
13. 명태, 뱀장어 양식 기반시설을 구축합니다..	24

Ⅲ. 해운해사항만 분야

1. 선원의 근로 환경이 개선됩니다.	25
2. 빈틈없는 항만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합니다.	26
3.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27
4. 각종 항만민원신고 창구가 단일화됩니다.	28
5.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29
6. 항만배후단지의 입주 기회가 확대됩니다.	30
7.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31
8. 제주항 크루즈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착수합니다.	32
9.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준공 등 주요 항만 공사가 완료됩니다.	33

IV. 총괄표	34
---------	----

새로 생겨나고





늘어나고, 줄어듦



9→12종

음식점의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됩니다.

50→55
만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늘어납니다.
-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

24→27종

양식재해보험 대상에 '터봇, 향어, 메기'가 추가됩니다.

2→3억원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이 상향 조정(3억원)됩니다.

수출 수산물 원산지 증명서류가 간소화됩니다.

- 증빙서류 4종 NO! 1종만 제출해도 O.K!

4→1종

선박의 출입신고 창구가 단일화됩니다.

7→1곳

해상케이블카 업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1/2

2톤 선박으로도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창업이 가능해집니다.

5→2톤



1. 해양 분야

1. 해수욕장 이용 환경이 개선됩니다.

해양레저과(☎ 044-200-5251~2)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를 강요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수욕장에서는 연중 하루 종일 흡연이 금지됩니다.

-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7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비치 베드**(beach bed),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허가구역 외에서 **피서용품 대여를 강요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10만원 이하)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신설됩니다.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개장시간**에만 해수욕장에서 흡연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연중 하루 종일** 흡연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 또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에서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출입이 허용되는 구역도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 법이 시행되는 2017년도 여름철부터는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보다 쾌적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스쿠버다이빙점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해양레저과(☎ 044-200-5257)

스쿠버다이버를 운송하는 수중레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기준이 마련됩니다.

-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 그동안 수중레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스쿠버다이빙점 등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수중레저 활동에 참가한 사람은 사고를 당해도 제도권 내에서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 수중레저법이 시행되면 수중레저 활동에 대한 사업 근거와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 아울러, 수중레저 활동자를 운송하는 선박의 안전기준, 수중레저 금지구역 및 수중레저 활동자에 대한 교육 기준도 마련되어 시행됩니다.
- 그동안 수중레저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수중레저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법 시행으로 수중레저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이 쉬워집니다.

해양레저과(☎ 044-200-5255), 항만지역발전과(☎ 044-200-5981)

2톤의 선박으로도 마리나 대여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선수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 마리나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7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려면 **5톤 이상**의 대형요트를 갖춰야 했지만, **이제는 2톤 이상의 요트만** 갖추어도 창업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 또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선수금 제도가 도입**되어,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 받거나 이용하려는 투자자 등으로부터 **사업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러한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대여 가능 마리나 선박이 1천여 척에서 3천여 척 ('15년 기준)까지 늘어나고, 선수금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 마리나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해상케이블카 업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줄어듭니다.

연안계획과(☎ 044-200-5266~7)

공유수면의 상공을 이용하는 해상케이블카, 로프형 레저시설 등에 대한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이 마련됩니다.

-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7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 그동안 해상케이블카, 로프형 레저시설 등은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이 없어 다른 기준을 적용(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3)하여 왔습니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종전의 점용·사용료의 절반(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5)만 지불하게 됩니다.
- 앞으로 해상케이블카 업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줄어들어 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해양심층수 미네랄 추출물이 모든 식품 원료로 활용됩니다.

해양개발과(☎ 044-200-5248, 5249)

해양심층수로부터 추출한 천연 미네랄(고형)이 '17년 하반기부터 식품 원료로 이용됩니다.

- 그간 해양심층수의 미네랄 성분은 식품용수로서 액체 형태로만 식품에 활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고체 형태로 추출한 미네랄도 식품 원료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과 해양수산부의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개정 예정

- 해양심층수의 미네랄 추출물이 건강기능식품원료 등으로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 식이 미네랄 산업에 새롭게 진출할 기반이 마련됩니다.

* 미네랄 추출물이 활용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식물성 보조식품(45.7%), 비타민(25.4%)에 이어 세 번째(19.5%)로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미국, IBISWorld社, 2013)

* 미국의 식이 미네랄 시장은 약 2조 8천억원 규모(2013년 기준)

- 또한 해양심층수의 미네랄 추출물이 의약, 식품, 화학산업 등에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과의 동반 성장도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52종에서 77종으로 늘어납니다.

해양생태과(☎ 044-200-5315)

'웃는 고래' 상괭이, 고래상어 등 25종이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되어 관리됩니다.

- '17년 1월 1일부터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25종 늘어납니다.

*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1종, 고래상어 및 점해마 등 어류 3종, 흰이빨참갯지렁이 등 무척추동물 7종, 연안성조류 등 바닷새 14종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우리 바다에서 개체수가 크게 감소 증거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개체군 감소 위협요인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불가능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새롭게 늘어남으로써 해양생태계가 보호되고 종 다양성이 보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라진 갯벌이 다시 돌아옵니다.

해양생태과(☎ 044-200-5313~4)

전북, 서천, 서산, 인천 4개 지역의 사라진 갯벌을 국민에게 되찾아 주기 위한 갯벌복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 '17년에는 4개 지역의 갯벌 복원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 전북 고창, 서천 유부도, 서산 고파도의 폐염전과 폐양식장을 갯벌로 복원하고, 인천 옹진군은 두 섬(시도, 모도)간 연결도로로 단절된 해수를 유통시켜 갯벌생태계를 회복시킵니다.

* 사업기간 / 예산 : 2017~2020(4년) / 총 280억(각 70억원)

● 갯벌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80년대 후반에는 간척·매립 사업의 대상이었으나, 최근 오염물 정화, 홍수 조절, 생물다양성 보존 등 **생태적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점차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갯벌의 경제적 가치 : 단위면적(1km²) 당 약 63억원 (출처 : 서울과학기술대학, 2013)

** 해양수산부는 2010년부터 갯벌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순천만, 사천 등 8개 지역의 갯벌을 복원하였으며, 현재 강화 동검도 등 3개 지역의 갯벌을 복원 중에 있음

● 갯벌복원은 갯벌 기능 회복으로 **연안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회복**과 새로운 **생태관광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백령도에 점박이물범 인공휴식지를 조성합니다.

해양생태과(☎ 044-200-5315, 5317)

해양수산부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07.4)하고 있는 점박이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에 물범 인공휴식지를 조성합니다.

- 물범은 살아가는데 주기적으로 육상에서 휴식을 가져야 하지만, 현재 백령도 인근에는 물범(250여 마리)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 * 물범의 주요 휴식공간인 물범바위의 노출면적은 약 400㎡이나, 필요 휴식공간은 810㎡
- 백령도 내 물범이 가장 많이 사는 물범바위, 하늬바다를 대상으로 조수간만의 차에 관계없이 휴식이 가능한 시설(인공데크 등)을 설치합니다.
 - * (‘17년) 물범 인공휴식지 조성 설계비 1식(1억원), (‘18년) 공사비 18억원 예정
- 한편, ‘17년 3월부터는 스마트폰 앱(마린통)을 통해 백령도 물범바위에서 휴식중인 점박이물범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며, ‘마린통’ 앱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앱 장터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백령도 물범바위에서 휴식중인 점박이물범 >



<샌프란시스코 39번부두에 조성된 인공휴식지>

9. 해양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건립합니다.

해양레저과(☎ 044-200-5257)

강의실과 수영장·다이빙 풀, 200인 규모 생활관 등 청소년 전문 해양교육원을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 내에 건립합니다.

-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 증대와 자유학기제 도입 등에 따른 청소년들의 새로운 진로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시설이 없었습니다.
- 전남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 내에 청소년들의 전문 해양 교육을 위한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17년부터 착공합니다.
 - '20년에 완공되면 4계절 해양레저체험장, 가상체험시설, 다목적 강의실, 숙박시설 등 청소년 대상 전문 해양교육 인프라가 조성되어 체계적인 해양교육이 가능해집니다.
-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으로 청소년들의 해양에 대한 도전정신이 고취되고, 해양문화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남극 내륙연구를 위해 코리안 루트(K-루트)를 개척합니다.

해양개발과 ☎ 044-200-6182

남극 내륙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육상 이동경로인 '코리안 루트(K-루트)'를 개척하고, 빙저호·심부빙하 시추기술을 개발합니다.

-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남극점에 이르는 육상 이동경로(약 3,000km)인 **코리안 루트(K-루트)**를 개척하여 빙저호*와 심부빙하**에 접근합니다.
 - * 빙저호(氷底湖, Subglacial Lake) : 남극처럼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지형으로 수백m~수km 두께의 남극 빙하 밑에 위치한 호수
 - ** 심부빙하(深部氷河, Deep Ice Core) : 육지에 내린 눈이 뭉쳐 형성된 빙하 중 3,000m 이상의 두께를 가진 거대한 얼음덩어리
- 빙하 시추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100만 년 전의 기후**와 빙저호의 미생물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 코리안 루트 개척과 빙저호·심부빙하 시추기술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이 남극 내륙연구를 선도해 나갑니다.



11. 이사부호를 통해 대양연구의 닷을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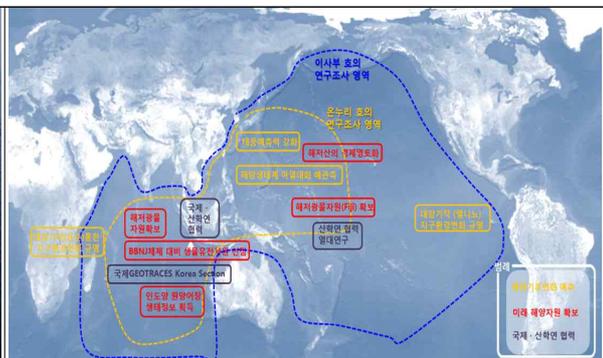
해양개발과(☎ 044-200-5241)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해양조사선 이사부호가 북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첫 대양연구를 시작합니다.

- 전 세계 바다의 자원을 탐사하고 지구 환경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건조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가 '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양연구**를 시작합니다.
 - * '이사부'는 울릉도를 개척한 신라의 장군이자 해양 진출을 도모한 선구적인 인물로서 이사부호가 이사부 장군의 진취적인 기상과 도전정신을 이어 받아 세계의 대양을 누비며 바다 개척의 꿈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
- '10년 4월부터 '16년 11월까지 6년 7개월 동안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이사부호는 **북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과학연구**를 수행합니다.
 - 북서태평양에서는 **태풍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 * 연간 약 1조원의 태풍 피해 저감 가능
 - 인도양에서는 열수구 주변에 서식하는 **새로운 해양생물 및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 이사부호의 대양연구 수행으로 우리나라도 **해양연구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사부호 >



< 이사부호 연구조사 영역 >

II. 수산 분야

1. 오징어, 꽃게, 참조기도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유통정책과(☎ 044-200-5447~8)

음식점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이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표시판과 글자 크기도 2배로 확대됩니다.

- 음식점(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내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 등을 개선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종전의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9개*에 소비량이 많은 3개(오징어, 꽃게, 참조기) 품목을 추가하여 원산지표시대상이 12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 또한, 지금까지는 구이용, 탕용, 찌개용 등 특정 조리방법으로 조리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표시하였지만, '17년부터는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를 A4(21×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29×42cm)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 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지도교섭과(☎ 044-200-5563, 5565)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의 벌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개정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17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외국어선이 자국의 어업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몰수할 수 있도록 현행 몰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에 부과되는 담보금을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 질서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증명이 보다 간편해집니다.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1~2)

수산물 수출업계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필요했던 원산지 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 지금까지 어업인과 수출업체는 수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4종 이상 구비해야 했습니다.
- 앞으로는 굴, 전복 등 국내에선 생산하는 수산물 79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서류* 1종만으로도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 수산물품질인증서, 수산물지리적표시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유기수산물인증서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시행('16.11.30)

- 그동안 자유무역협정 체결국(미국 등 52개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절차가 까다로웠으나, 앞으로는 1종의 문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져서 어업인과 수출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관세 인하혜택을 주는 제도

4. 어선거래가 투명해집니다.

어선정책팀(☎ 044-200-5523)

어선의 매매나 임대차와 관련, 어선 정보와 매물 현황 등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 어선거래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어선중개업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어선법」 개정안이 '17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그간 어선거래는 공개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매매자간 정보단절 및 음성적 거래**로 다양한 위법·편법,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매물어선에 대한 어선의 등록, 허가 및 검사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어선거래시스템을 '17년에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 또한, 중개업자의 음성적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중개업 등록을 의무화** 하고 불성실한 중개인의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어업인과 중개업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어선거래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수산물 유통·판매 등 수협 본연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수산정책과(☎ 044-200-5431)

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수협은행을 분리하고 수산물 유통·판매 등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을 독립시키고 중앙회를 어민 지원과 수산물 판매·유통·수출 조직으로 전문화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편('16.12.1) 하였습니다.
- 중앙회는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어업인의 수익률을 높이고 소비자가 품질 좋은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산지거점 유통센터(FPC)를 육성하고, 위생과 식품안전시설을 강화한 품질위생관광형 위판장을 도입하며, 권역별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를 건립합니다.
- 이를 통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터봇, 향어, 메기도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복지과(☎ 044-200-5471)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4개에서 27개로 확대하고, 고수온 피해에 대한 보험 상품이 개발됩니다.

- '17년 상반기에는 **터봇, 향어, 메기**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이 **24개에서 27개로 확대**됩니다.
 - (현행) 넙치, 조피볼락, 돔류, 전복 등 24개 → ('17) 터봇(3월), 향어, 메기(5월)
- 또한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보험 상품이 개발됩니다.
 -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는 고수온 특약 상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해상양식장을 대상으로는 고수온을 보험의 주계약에 포함하거나, 고수온과 저수온으로 특약을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 고수온과 저수온 특약 구분으로 보험료를 낮춤으로써 양식어가의 보험 가입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꽃게 자망에도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합니다.

어업정책과(☎ 044-200-5515)

물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꽃게 자망의 사용 확대를 위해 규격을 다양화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과 유령어업*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04년부터 물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 '07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였고, 현재 대게, 참조기, 물메기 등 8개 어종에 대해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 * 유령어업 : 버리거나 유실된 폐그물, 폐통발에 해양생물이 걸리거나 갇혀 죽는 것
 - ** 수중에서 2년 후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분해되는 어구(기존 나일론 어구는 썩는데 600년이 소요되어 환경오염, 유령어업 피해 등 문제 야기)
- '17년 1월부터는 생분해성 꽃게 자망을 신규로 보급하고,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할 경우에 지급하던 지원금을 상향 조정합니다.
 - 종전에는 생분해성 어구와 나일론 어구의 차액을 보조해주고, 기존어구 가격의 10%를 추가로 지원하였으나, '17년부터는 신규로 보급되는 생분해성 어구에 한하여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로, 생분해성 꽃게 자망을 이용하려는 어업인은 해당 시·군·구, 또는 가까운 수협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꽃게 자망은 주로 중국산 나일론 어구를 사용하여 왔으나, 국산 생분해성 꽃게 자망으로 전면 대체할 경우 연간 485억 원의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어업인 복지가 향상됩니다.

소득복지과(☎ 044-200-5463, 5465)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5만원 인상되고, 어가도우미의 지원일수가 10일에서 30일로 확대됩니다.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어촌의 피해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인상됩니다.**

- '17년에는 5만원이 인상되어 어가 당 55만원이 지원되고, '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되어 '20년에는 어가 당 70만원이 지원됩니다.

*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도서(섬) 또는 8km미만 떨어진 도서 중 정기여객선이 1일 3회까지 운항하는 연륙되지 않은 도서(섬)

**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어촌분야 피해보전 대책으로 도입('12년)되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섬)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營漁)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가도우미의 지원일수가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됩니다.

- 신청 대상은 ①임신 1개월 이상, ②출산 후 3개월 이내, ③1주일 이상의 진단을 받아 영어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1936.1.1 이후 출생한 자)의 어업인이며,

- 거주지 지역수협 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 1일 70,000원 이내 어가도우미 이용료를 지원(자부담 30%)

9.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를 추가합니다.

소득복지과(☎ 044-200-5461)

어업안전보건센터에서 실시하는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한의학 진료를 추가합니다.

- 낙도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은 육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병이 있어도 제때에 치료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자체와 협력하여, '16년부터 지역별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하여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행사(7~9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경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조선대학교병원

** 진료 과목 : 혈압, 혈당측정, 무릎 관절염 진료상담 및 약물 처방 등

*** '16년 실적 : 하동군·완도군·창원시·진도군·남해군 등 5개 지역, 185명 고령·어업인 진료

- '17년에는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5→10개소)하고, 진료과목에 한의학(침, 뜸 등)을 추가합니다.
- 이를 통해 낙도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의 의료·복지 서비스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어업안전보건센터 홈페이지(www.koreanfisherman.org)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활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물류센터를 건립합니다.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1~2)

부산 신항에 수출 전용 활(活)수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수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합니다.

- 활수산물은 폐사 방지를 위해 일정시간 동안 수조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나, 전문 수조시설이 부족하여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7년에 **부산 신항에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를 건립***합니다.
 - 새로 건립되는 물류센터에는 12개의 수조, 오폐수처리시설, 컨테이너 적치장 등이 구비되어, **1일 최대 54톤의 활수산물 보관이 가능**해집니다.
- * 사업기간/운영주체/사업비 : 2017년(1년)/경상남도/50억원(국비50%, 지방비 50%)
- 활수산물을 물류센터에 보관하여 해상으로 운송할 경우, **항공운송 대비 물류비를 50% 절감**(항공 12천원/kg, 해상 6천원/kg)할 수 있어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국제협력총괄과(☎ 044-200-5336)

우리나라에서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이 2017년 9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 '15년 해양수산부가 '세계수산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제안서를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 제출한 이후, 세계수산대학 설립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FAO 이사회에 상정된 제안서는 과반수의 이사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본격적인 대학 설립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 FAO와 해양수산부는 세계수산대학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절차**를 거쳐 설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첫걸음으로 **시범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부산시 소재 국립부경대학교에서 2017년 9월부터 약 18개월 동안 세계수산대학을 시범 운영*하며, 우리나라의 대학운영 능력을 검증하고, FAO의 책임 있는 통제 및 관리 능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 개도국 학생 45명, 수산분야 3개 학부, 3학기(18개월), 무상교육
- ** FAO는 교육기관 운영경험이 없어,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범위와 통제 능력을 점검
- 2019년에 개최되는 FAO 총회에 시범사업 결과가 상정되며, 세계수산대학의 설립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12. 차세대 한국형 어선 개발에 착수합니다.

어선정책팀(☎ 044-200-5523~4)

'17년부터 '20년까지 연근해어업 10개 업종에 대한 차세대 한국형 어선 표준모델 개발에 착수합니다.

- '20년 기점으로 국내 연근해어선(4,500척)의 43%인 19천여 척의 선박이 노후화되어 어선어업의 구조개혁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 * 일반적으로 선령이 5년 이내인 경우 신선(新船), 20년 이내는 중고선, 21년 초과를 노후선으로 구분
 - ** 선령 21년 이상(연근해 45천여 척 중) : ('15) 16(73백여 척)→ ('20) 43→ ('25) 69%
- 차세대 한국형 어선은 어선원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되고, 에너지가 절감되는 친환경적인 어선으로 개발됩니다.
 - 어선 개발과정과 시험조업 등에 어업인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비 절감, 어선원 복지 향상 효과 등을 직접 검증할 계획입니다.
 - * 사업기간/총사업비 : '17~'20(4개년)/376억 원(국비 242, 민간 134)
 - * 연구수행기관 협약 체결은 '17.3월 예정
- 차세대 한국형 어선이 상용화되면 기존 어선을 사용할 때 보다 어업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어선원의 근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 명태, 뱀장어 양식 기반시설을 구축합니다.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1), 양식산업과(☎ 044-200-5637)

완전양식 기술이 개발된 명태와 뱀장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합니다.

-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16.10)**한 명태의 인공종묘 생산을 위해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강원)에 **전문 생산시설을 구축합니다.**

- 한해(寒海)성 어종인 명태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명태사육에 필요한 해양심층수를 공급할 취수관을 구축하는 등 명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사업기간/총사업비 : '17년/4,800백만 원

- 또한 **세계 2번째로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16.6)**한 뱀장어의 인공종묘 생산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부산)에 **전문 연구시설을 구축합니다.**

* 사업기간/총사업비 : '17~'18년/4,983백만 원

- 대량 생산한 명태 종묘를 방류하여 우리나라의 명태 자원이 회복되고, 연간 5만 톤 정도가 어획될 경우 약 4천억 원의 어업인 소득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뱀장어는 종묘가 대량 생산될 경우 약 4천억 원의 수입 대체효과와 4조원의 전 세계 실뱀장어 종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II. 해운·해사·항만 분야

1. 선원의 근로 환경이 개선됩니다.

선원정책과(☎ 044-200-5745)

유기구제보험 도입, 임금채권보장보험 확대 및 선원 최저임금 인상 등 선원의 근로에 대한 재정적 보장이 강화됩니다.

- 선원의 사망, 부상 및 유기에 대한 사회안전망(보험제도 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선원법」이 '17년부터 시행됩니다.
- 앞으로는 선사 파산 등으로 선박소유자가 능력이 없어도 선원이 안전하게 송환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정적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됩니다.
 - 유기구제보험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선박소유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고, 유기선원은 송환비용 등 외에도 식료품, 식수, 연료 등의 선내 필수품 공급 비용이 보장됩니다.
 - 선원임금채권 보장보험이 확대되어 보험한도가 미지급임금 3개월분/미지급 퇴직금 3년분에서 4개월분/4년분으로 확대됩니다.
 - 또한 선원 또는 선원이 지정한 대리인은 보험사업자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 보험료 미납 등을 이유로 보험사업자가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등 선원의 보험금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 이외에도 '17년 선원 최저임금이 월 176만8백 원으로 결정되어 '16년 대비 약 7.3% 인상되는 등 선원의 처우 및 근로 여건 등이 개선됩니다.
 - *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월급 135만원)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 유기구제보험 도입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의 「선원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빈틈없는 항만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합니다.

항만운영과(☎ 044-200-5777)

불법 밀입국, 무단 이탈 등 항만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업무 전문 업체 위탁지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 그동안 영세 경비업체의 난립, 특수 경비원의 높은 이직률과 그로 인한 전문성 부족 등은 항만보안의 주요 취약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17년 6월부터는 항만보안분야에 **경비·검색업무 전문 위탁업체 지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 항만보안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본금, 상시 고용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예정('17.5)
- 더불어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 장비도 새롭게 보강**됩니다.
 - * 제주항의 경우 화물차량이나 컨테이너 등에 은신하여 불법 입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형 X-Ray 검색기 등 도입

3.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연안해운과(☎ 044-200-5736)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해양수산부는 '01년부터 연안화물선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사용에 대해 일정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수급 사례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 경유 1ℓ 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급('17년 유류세 528.75원 - '01년 유류세 183.21원)

- '17년부터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국민 누구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발견*하여 가까운 지방청 또는 해경 등에 신고하면 적발량에 따라 최소 30만원(20만ℓ 미만)에서 최대 300만원(100만ℓ 이상)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거래 자료, 실제 운항거리 및 연료사용량 증명 자료, 다른 목적 사업에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타인이 구입하여 사용한 자료 등

-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감시할 수 있게 되어 보조금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보조금 부정수급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종 항만민원 신고창구가 단일화됩니다.

항만운영과(☎ 044-200-5784)

기관별로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어 민원창구가 단일화되고 신고업무가 간소화됩니다.

- 기관 및 업무 중심으로 분산·운영하던 해운물류 분야의 각종 정보시스템*이 '17년 2월부터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단일화됩니다.

*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글로벌화물추적(GCTS), 항만물류정보 공동활용(POSS), 위험물컨테이너관리(Port-DMS), 해운종합정보(SIS) 등

- 이에 따라 항만 관련 민원 신고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 부산항으로 위험물 컨테이너를 반입하는 선박은 입항신고는 부산항만공사에, 위험물 반입신고는 부산항에 각각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 창구가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단일화됩니다.

- 또한 선박의 입항에 따른 각각의 **사용료***도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 기존에는 표지사용료는 지방청, 선박료는 항만공사, 방제분담금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각각 수납

- 앞으로도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항만민원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항만정책과(☎ 044-200-5920~1),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6)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에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민간의 직접 개발과 분양이 가능해집니다.**

-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항만법」이 '17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 항만배후단지 : 분업화 추세에 따라 항만을 단순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으로써 1종과 2종으로 구분

- (1종)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 및 물류기업 입주
- (2종)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항만배후단지 기능보강 시설 입주

- 그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등이 수행하는 공공 개발방식으로 한정되어 증대하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수요를 탄력적으로 충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앞으로는 개발단계부터 민간의 참여가 가능해지고, 민간이 직접 분양하는 것도 가능해짐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지고, 민간의 우수한 마케팅 역량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항만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항만배후단지의 입주 기회가 확대됩니다.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사업실적평가 체계 개선 등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이 '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그간 제조업은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를 차지하여야만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으나, **'17년부터는 수출입액 비중의 30%로 하향 조정**되어 제조업의 입주기회가 보다 확대됩니다.
- 또한 항만별로 특화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입주기업 선정 평가지표를 개별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입주기업의 사업 활동에 대한 **실적평가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다한 자료 작성 등에 따른 **입주기업의 부담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1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68),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93)

해양오염 예방활동 및 태풍상황 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예방·대비 활동체계가 마련됩니다.

- 그간 해양오염사고, 태풍피해 등 해양수산 재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 지원체계가 없었습니다.
 - 해양오염예방 활동은 위험물 취급 항만 내를 단순 무작위로 순찰하거나, 안전홍보를 하는데 그쳤으며,
 - 태풍 발생 시 상황 판단을 위해서는 과거 태풍 기록, 기상 자료 등을 일일이 수집·분석해야 하는 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17년부터는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시스템 운영을 통해 해양수산 재난 대응체계가 보다 스마트해집니다.
 -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순찰 및 방제 체계가 **사고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 (대량 유류 반·출입, 사고빈도 등)를 고려하도록 개선됩니다.
 - 또한 태풍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별**(기상청, 국민안전처)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공유**하여 신속한 상황판단 및 대응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 앞으로는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 및 관리를 통해 해양수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제주항 크루즈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착수합니다.

항만운영과(☎ 044-200-5774)

**제주항의 크루즈 기항 증가에 따른 선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맞춤형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 국제 크루즈선의 입항 횟수와 크루즈 관광객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선용품 공급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 국제크루즈선 입항횟수 : ('15) 415 → ('16)800 → ('20^e) 2,000회

* 국내 크루즈 관광객 수 : ('15) 88 → ('16)190 → ('20^e) 300만명

* 식료품, 연료, 수리용 부품, 비품 및 소모품으로 선박에서 상용되는 물건을 통칭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7년부터 제주항에 크루즈 맞춤형 종합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 식자재 공급을 위한 냉장·냉동 보관시설 및 선용품 포장, 유통 시설 등

* 총사업비 78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19년에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국내 크루즈 선용품 공급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정기 크루즈선(14척)에 약 5,300만불*(620억원) 규모의 선용품 공급을 추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42만불(1척당 1개월 공급확대 가능량) × 14척 × 9개월

9.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준공 등 주요 항만 공사가 완료됩니다.

항만정책과(☎ 044-200-5911~3)

여객터미널 신축, 해경부두 조성, 방파제 축조 등 주요 항만 공사가 완료되어 국민 편익이 증진됩니다.

- '17년에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평택·당진항 해경부두 축조 등 주요 항만 공사가 완료됩니다.

완공일시	주요 사업명
'17.1월	인천남항 제3준설토투기장 북측교량
'17.4월	완도항 연안여객터미널 신축, 용기포항 동방파제 연장
'17.5월	평택·당진항 해경부두 축조, 목포 북항 활어선 접안시설 및 파제제
'17.7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17.9월	묘도재개발 진입도로 개설, 울산신항 남방파제(2-1공구)
'17.10월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진입도로, 흥도항 동방파제 축조
'17.11월	대천항 해경부두 조성, 주문진항 이안제 축조
'17.12월	울릉(사동)항 동방파제 축조, 동해·묵호항 재창조, 땅끝항 건설(준설)

- 특히, 10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준공됨에 따라 강원 지역의 크루즈 관광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속초항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하는 크루즈 유치 활동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평택·당진항 해경 전용 부두가 완공됨에 따라 서해안 지역의 해상 치안이 강화되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V. 총괄표

구 분	증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해양 분야 >			
1. 해수욕장 이용 환경 개선	○해수욕장 개장시간 금연 ○신 설 ○차마출입구역 불명확	○해수욕장 개장시간과 무관하게 전일 금연 ○피서용품 대여 강요시 과태료 부과 (10만원 이하) ○차마의 출입구역을 명확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6.28)
2. 수중레저 활동 관련 법률 제정	○신 설	○수중레저법 제정·시행 - 수중레저 사업자 등록기준 마련 - 수중레저 안전기준 마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17.5.30)
3.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 기준 완화 등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 가능 선박기준 : 5톤 이상 ○신 설	○2톤 이상으로 기준 완화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시행자가 투자자 등으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제도 도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7.6.28)
4. 해상케이블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개선	○공유수면 상공 관련 규정이 없어 타 산정 기준(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적용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上)
5. 해양심층수 미네랄 추출물 식품원료 활용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한 미네랄이 액체 형태로만 식품에 활용 가능	○고체형태로 추출한 미네랄도 식품 원료로 활용 가능	-
6. 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 지정	○ 52종	○ 77종(25종 추가) - 상괭이, 고래상어, 점해마, 흰이빨참 갯지렁이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1.1)
7. 갯벌 복원 확대	○신 규	○4개 지역(고창, 서천, 서산, 옹진) 갯벌 복원 신규 추진	-
8. 백령도 점박이물범 인공휴식지 조성	○신 규	○백령도 내 물범 인공휴식지 조성 (‘17~‘18년, 19억원) ○스마트폰앱(마린통)으로 점박이 영상 실시간 제공	영상제공(‘17.3월)
9.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신 규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1식(‘20년 개원) - 전남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 내 - 4계절 해양레저체험장, 가상체험시설 및 숙박시설 등	-
10. 남극 코리안 루트 개척	○신 규	○세계 최초로 빙저호 시추 및 100만 년 전 기후복원을 위한 코리안 루트(K-루트) 개척 등 추진	-
11. 이사부호 대양 연구	○신 규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의 본격적 대양연구 추진	-

< 수산 분야 >			
1.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넙치 등 수산물 9종 ○구이용, 탕용, 찌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에만 표시 ○원산지 표지판 A4크기, 글자크기 30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종(오징어, 꽃게, 참조기 3종 추가) ○모든 조리 음식에 표시 ○원산지 표지판 A3크기 이상,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1.1)
2. 중국 불법조업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보금 2억원 ○무허가어선 몰수 임의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억원으로 상향 조정 ○무허가어선 몰수 강행규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16.12.27)
3. 수출 수산물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가 국내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4종 이상의 증빙서류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인증서 1종만으로도 인정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16.12.월))
4. 어선거래 투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적 어선거래 시장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선거래시스템 구축·운영 ○어선중개업 제도도입 	어선법 (17.6.28)
5. 수협중앙회 사업 구조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신용 부문 통합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경제 부문과 신용부문을 분리 - 독립법인으로 수협은행 신설 - 수산물 판매사업 활성화 의무 규정 신설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6.12.1)
6.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품목 24개 ○고수온 관련 상품을 특약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품목 27개(향어, 메기, 터봇 추가) ○고수온 관련 상품을 주계약에 포함하거나 특약 세분화(고수온, 저수온 등) 	-
7. 생분해성 꽃게 자망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분해성 꽃게 자망 보급 	-
8. 어업인 복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금 50만원/어가당 ○어가도우미 지원일수 가구당 1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 -('17) 55 → ('18) 60 → ('19) 65 → ('20) 연 70만원/어가 ○어가도우미 지원일수 가구당 30일 이내 	한·중 FTA관련 여·야·정 합의 (17.1.월)
9.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역 5개소 ○진료 과목 : 혈압, 혈당 측정, 무릎 관절염 진료 상담 및 약물 처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개소로 확대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 (지역 공중보건한의사 활용)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원 사업 지침 (17.1.월)
10.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수산물 전용 수출 물류센터 건립 	-
11. FAO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운영 -17.9월 개원, 국립부경대학교 	-
12. 에너지 절감형 차세대 한국형 어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년 연근해어업 10개 업종에 대한 차세대 한국형 어선 표준모델 개발 착수 -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어선원 안전 및 복지 등 	-
13. 명태, 뱀장어 양식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태 인공종묘 전문 생산시설 구축 ○뱀장어 인공종묘 전문 연구시설 구축 	-

< 해운해사항만 분야 >

1. 선원 근로 환경 개선	○신 설	○유기구제보험 신설 및 가입의무화 ○임금채권보장보험 확대 등 ○'17년 선원 최저임금 인상(연 176만8백 원)	선원법 (17.1.18)
2. 항만보안 강화	○신 설	○항만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17.6.3)
3.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신 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시 최대 300만원 포상금 지급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17.1.1)
4. 선박 출입신고 창구 단일화	○항만운영정보시스템 개별 운영(3개청, 4개 항만공사)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통합·운영 - 전국 단일 시스템 운영으로 신고 업무 간소화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개시 (17.2월)
6.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 참여 가능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민간 참여 불가 * 기존 개발주체 :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등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및 분양에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	항만법 (17.6.21)
6.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회 확대	○입주 가능 제조업 기준 :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이상 ○입주기업 실적평가주기3년	○수출액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 ○입주기업 실적평가 주기 5년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17.1.1)
7.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시스템 운영	○신 규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시스템 운영으로 재난 대응 실시	-
5. 제주항 크루즈 종합지원센터 건립	○신 규	○크루즈 선용품 종합지원센터 건립 - 제주항 1개소, '19년 완공	-
5. 속초항 국제여객 터미널 준공 등 주요 항만 공사 완공	○신 규	○평택·당진항 해경부두 축조('17.5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준공('17.7월) ○울릉(사동)항 동방파제 축조('17.12월) 등 주요 항만 공사 완공	-